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5. 12. 22

나. 회부일자 : '95. 12. 22

3. 제안이유

○ 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신고,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, 집단공급사업허가권등이 각각의 관련법 시행령에서 시장·군수에게 위임됨으로써 현행 충청북도사무의 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로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였던 부분은 삭제하고 신설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시공과 관련한 도지사의 시정명령권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여 허가권자가 시정명령권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여 허가권자가 시정명령권을 행사토록 하고자 함.

○ 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였던 에너지관리자 및 시공업에 관한 업무가 통산부와 열관리시공협회로 업무이관, 위탁('95. 7.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)되어 도 위임 및 위탁 조례에서 관련부분 삭제 정리

4. 주요골자

○ 가스관련부분

(삭제정리)

- 고압가스제조(변경)허가와 관련된 업무
-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(변경)허가와 관련된 업무
-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(변경)허가와 관련된 업무
- 도시가스시공자 등록등

(신설)

- 액화석유가스 시공자에 대한 시정명령권

○ 에너지관련 부분

(삭제정리)

- 에너지관리자 선·해임, 퇴직신고
- 에너지시공업 관리에 관한 업무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고압가스제조허가 및 신고,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, 집단공급사업허가권 등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,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에서 시장·군수에게 권한 위임토록 명문화되어 있어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이부분이 유명무실해 졌기에 정비를 하고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시공과 관련한 도지사의 시정명령권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여 허가권자인 시장·군수로 하여금 시정명령권을 행사토록 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,

또한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던 에너지관리자 및 시공업에 관한 업무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협회에 위탁토록 되어 본 조례중 민간위탁사무에서 이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,

권한위임사무중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.

첫째, 가스관련 부분으로

(삭제정리대상 사무에 있어서는)

- 고압가스제조(변경)허가와 관련된 업무
-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(변경)허가와 관련된 업무
-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(변경)허가와 관련된 업무
- 도시가스시공자 등록등이 되며

(신설되는 사무에 있어서는)

- 액화석유가스 시공자에 대한 시정명령권이 되겠습니다.

둘째, 에너지관련 부분으로

(삭제정리대상 사무에 있어서는)

- 에너지관리자 선·해임, 퇴직신고
- 에너지시공업 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.

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법인 각각의 시행령에서 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하위법인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